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5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소병훈·박 정·송석준

인재근 · 안민석 · 강선우

이용호 · 윤호중 · 위성곤

임종성 · 이규민 · 한정애

김승남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유휴 업무용 시설·물품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 도록 개방·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자원은 약 16,6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현재 공공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여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령은 모두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행정재산의 중·장기적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편의를 위한 단기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이에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가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안내와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등의 국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공공개방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국민 이용의 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을 의미하며, "국민 이용"이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공공개방자원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안 제2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 공개방자원을 지정하고 그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

록 함(안 제8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개방자원의 정보와 신청 창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승인하고 이용료를 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등의 국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 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3. "공공개방자원"이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

- 이라 한다)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중에서 국민 이용의 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을 말한다.
- 4. "국민 이용"이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공공개방자원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리적으로 사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해당 행정기관등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공공개방자원을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등은 공공개방자원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등은 공공개방자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등은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으로 인하여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는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법령과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에 관하

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행정 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행정안 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공공개방자원의 국 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공공개방자원의 관리 및 국민 이용에 관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물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물품수급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공공개방자원이용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개방자원의 지정 및 등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 이용 기간 등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개방자원과 그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9조의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개방자원과 그 이용 조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공공개방자원 이용 신청을 위한 창구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

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이용의 승인 및 취소·철회)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신청을 받으면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이용 조건(이하이 조에서 "이용 조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행정기관등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 2. 이용 승인을 받은 공공개방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3. 행정기관등의 장의 승인 없이 공공개방자원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4. 이용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 ③ 이용의 승인 및 취소·철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이용료의 징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한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개방자원의 경우에는 이를 보유·관리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용료의 산정·징수(제11조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및 제1 2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공공개방자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방자치단체가 보 유·관리하는 공공개방자원에 한한다)
 - 3. 공공개방자원을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단체 등 그 밖에 국

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용하지 못한 시간 및 기간에 대한 이용료 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3조(원상회복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①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공공개방자원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②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공공개방자원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용료 외에 국회규칙, 대법 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나 물품 가액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개방자원에 대 해서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면책)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 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6조(권한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의 승인 및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